

2000년 8월3일 북경에서 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기간·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채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채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1. 각 채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3. 일방채약당사자는 타방채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채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한 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
- 나. 북위 36도 22분 23초, 동경 123도 10분 52초의 점 (a2)
- 다.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3)
- 라.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4)
- 마.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a5)
- 바.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a6)
- 사.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a7)
- 아.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a8)
- 자. 북위 32도 11분, 동경 123도 49분 30초의 점 (a9)
- 차.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a10)
- 카.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a11)
- 타.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a12)
- 파.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a13)
-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4)
- 거. 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5)
- 너.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20분의 점 (a16)
- 더.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7)

2. 양 채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계약당사자가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계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8조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까지 다음 (1) 및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과도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한국측 과도수역 좌표

-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
-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k2)
-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k3)
-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k4)
- 마.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k5)
- 바. 북위 32도 11분, 동경 126도 45분의 점 (k6)
- 사. 북위 32도 40분, 동경 127도 00분의 점 (k7)
- 아. 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의 점 (k8)
- 자. 북위 32도 29분, 동경 125도 57분 30초의 점 (k9)
- 차. 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 28분의 점 (k10)
- 카.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35분의 점 (k11)
- 타. 북위 34도 25분, 동경 124도 33분의 점 (k12)
- 파.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48분의 점 (k13)
-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4)

(2) 중국측 과도수역 좌표

-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
-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2)
-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3)
-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00분의 점 (c4)
- 마. 북위 31도 50분, 동경 123도 00분의 점 (c5)
- 바. 북위 31도 50분, 동경 124도 00분의 점 (c6)
- 사.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c7)
- 아.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c8)
- 자.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c9)
- 차.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0)
- 카.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1)
- 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2)

2. 각 계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계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양 계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승선·정선·승선검색 등을 포함한 공동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그 어선의 명부를 상호 교환한다.

5.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

양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복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연안에서 해난이나 기타 긴급사태를 당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구조 및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상황을 일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악천후나 기타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ii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구 등에 피난할 수 있다. 해당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필요한 자료교환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 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 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 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 (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채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 (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 (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채약당사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4. 양 채약당사자의 정부는 제2항(1)의 권고를 존중하고, 제2항(3)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양 채약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채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조

- 1. 이 협정은 양 채약당사자가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
- 3. 일방채약당사자는 타방채약당사자에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i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허가에 관한 아래 조치를 취한다.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 제3조에 정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발급에 있어 적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에 관한 절차규정(허가증의 신청과 발급, 어획량에 관한 통계자료제출,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 등)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규정한 어선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부속서 ii

이 협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관련 항구를 관할하는 항구감독기관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연락방법에 대하여는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보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연락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명 · 호출번호 · 현재위치(위도 · 경도) · 선적항 · 총톤수 · 전장 · 선장의성명 · 선원수 · 피난이유 · 피난요청목적지 · 도착예정시각 및 통신연락방법